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646
----------	-----

제출년월일 : 2001. 1. 2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 이유

지방채 사업은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한 사업이므로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의 완화를 위해 현재부터 적절한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안 제2조제1항).
- 나.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안 제2조제2항).
-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안 제3조제1항).
- 라. 지방채무상환기금 계좌 별도 설치 관리 및 시금고 예치·관리(안 제4조).
- 마.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안 제6조제1항).

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 (안 제6조제2항).

아.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안 제7조).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매년 채무상환비율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그에 따른 일정율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 10%이상 ~ 2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적립

2. 채무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적립

3. 채무상환비율 30%이상 :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적립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파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 획 실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 획 실 장 이 춘 기
	담 당 직위·성명	예 산 담 당 유 종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성 원 (4 0 6 1)